산학협력선도대학(LINC 3.0)사업단 운영 규정 <2022. 3. 1.>

제정 2017.06.01.
개정 2022.03.01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 3.0) 육성사업 관리운영 규정에 따라 수원여자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(LINC 3.0)사업단(이하 "사업단"이라 한다)의 구성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 3. 1.>

제2조(역할)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활동
2. 산학협력친화형 대학 체제 개편
3. 특성화 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
4. 대학과 산업체간의 맞춤형 기업지원시스템 구축
5. 대학과 산업체간의 협업센터 운영 <신설 2022. 3. 1.>
6. 산업체와의 공용장비운영센터 운영 <신설 2022. 3. 1.>
7. 산학협력관련 전문인력 확충 및 관리 <신설 2022. 3. 1.>
8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제5호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2장 조직

제3조(조직) ① 사업단은 총장 직속으로 둔다.

② 단장은 총장이 임명하며,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
1. 사업계획 및 총괄 수행
2. 사업결과 및 사업비 실적의 보고
3. 사업 실적 및 성과・평가
4.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・개정
5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(하부조직) ① 사업단에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원조직, 운영위원회와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관련 조직을 둘 수 있다.

② 행정사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, 조교와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단장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행정사무지원조직에 임명된 교직원은 사업단 소속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제3장 LINC 3.0 위원회 <신설 2022. 3. 1.>

제5조(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.0 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총장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 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6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단 운영에 관한 정책 자문
2. 조직 및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3. 사업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4. 사업 계획 및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
5. 기타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7조(소집 및 의결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, 결정권을 갖는다.

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4장 LINC 3.0 사업단 운영위원회 <개정 2022. 3. 1.>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.0 사업단 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 3. 1.>

② 운영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LINC 3.0 산학협력단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 <개정 2022. 3. 1.>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[제5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단 운영의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및 수립(변경 포함)
2. 사업단 사업 예산 배정 및 변경
3. 사업단 관련 프로그램 집행 및 관리
4. 사업성과 분석· 평가 및 환류
5. 사업단 운영 규정의 개, 폐에 관한 사항
6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제6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10조(소집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, 결정권을 갖는다.

[제7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5장 LINC 3.0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 <신설 2022. 3. 1.>

제11조(자체평가위원회) ①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자체평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LINC 3.0 사업단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LINC 3.0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

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,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12조(심의사항)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자체평가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심사보고서 작성
2. 자체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 및 시행
3. 사업 예산에 대한 적절성
4. 사업단 관련 세부 프로그램 실행 결과
5. 진행방안 협의 및 과정별 사업운영 실적관리
6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13조(소집 및 의결)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, 결정권을 갖는다.

[본조신설 2022. 3. 1.]

제6장 산학연관협력위원회 <개정 2022. 3. 1.>

제14조(산학연관협력위원회) ① 수원여자대학교와 LINC 3.0 사업에 관한 외부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자문을 위하여 산학연관협력위원회(이하 “협력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 3. 1.>

②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LINC 3.0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교내 교직원 및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, 정부기관 등의 관계자 중 7인 내외를 사업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사업단장이 된다. <개정 2022. 3. 1.>

③ 위원장, 당연직 위원 및 운영기관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[제8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15조(심의사항)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산학연관협력과 관련된 사업의 기획 및 시행에 대한 자문
2. 산학연관협력과 관련된 성과의 평가 등에 대한 자문
3.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[제9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제16조(소집 및 의결) ① 산학연관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, 결정권을 갖는다.
[제10조에서 이동<2022. 3. 1.>]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